

1. 개정이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자동차로 사용하는 경우에 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번호변경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타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나 가족 간의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견인차의 최대적재량의 정확한 의미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하여 과적단속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20.4.7. 개정, '21.4.8. 시행)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플랫폼운송사업 자동차로 사용하는 경우의 등록번호 변경 근거 신설(안 제29조제2항 및 별표 1)

- 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 내용이 변경되어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 번호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별표 1의 세부유형을 개정하여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을 운수사업용 세부규정으로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함

나. 견인차의 최대적재량의 정확한 의미 표기(안 별지 제1호)

- 과적단속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된 견인차의 최대적재량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자동차등록증(제원의 유의사항란)에 표기

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절차 개선(안 별지 제2호)

- 가족 간의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타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대신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의 유의사항란 개정

라. 매매상사 소유 차량의 사용본거지 표기 개선(안 제3조제1항)

-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의 경우 사업장소재지를 사용본거지로 하도록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2. ~ 2021. 1.) 예정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동차 소유자가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
(매매용 자동차) : 사업장소재지

제29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 내용이 변경되어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별표 1,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자동차등록규칙 [별표 1]

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제5조 관련)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

구분	세부유형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내버스(일반)

	시내버스(좌석) 시내버스(직행좌석) 시내버스(광역급행) 농어촌버스(일반) 농어촌버스(좌석) 농어촌버스(직행좌석) 시외버스(일반) 시외버스(직행) 고속버스(일반) 고속버스(우등) 마을버스 예비차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세버스 특수여객 일반택시 개인택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자동차대여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

구분	세부유형
일반형 화물자동차	일반카고트럭류 풀카고(Pull-cargo)트럭류
덤프형 화물자동차	덤프트럭류
벤형 화물자동차	일반벤형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냉장·냉동자동차류 내장자동차류 보냉자동차류 윙바디(Wing-body)자동차류 자동하역자동차류 이산화물수송자동차류 탱크트레일러류

벌크트레일러류
 평판트레일러류
 컨테이너샤시트레일러류
 저상식트레일러류
 덤프트레일러류
 풀카고(Pull-cargo)트레일러류
 코일 전용 트레일러
 유류탱크로리류
 급수차류
 이동주유자동차류
 살수차류
 알루미늄 탱크로리류
 가스수송탱크로리류
 벌크트럭류
 분뇨탱크로리류
 화학물질 탱크로리류
 오페수 탱크로리류
 트랜스포터(Transporter)류
 셀프로더(Self-loader)류
 셰이프티로더(Safety-loader)류
 보틀캐리어(Bottle carrier)류
 원목수송자동차류
 물탱크소방차류(화물자동차)
 현금수송자동차류(화물자동차)
 곡물수송자동차류
 사료수송자동차류
 동물수송자동차류
 활어수송용자동차류
 압축·압착진개자동차류
 암롤(Arm roll)트럭류
 롤온(Roll on)트럭류
 진개덤프류
 진공탱크로리류
 도로청소자동차류
 진공흡입자동차류

	하수도청소자동차류 음식물수거자동차류 직진식 카고크레인류 굴절식 카고크레인류 그 밖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견인형 특수자동차	컨테이너수송 트랙터 벌크시멘트수송 트랙터 그 밖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렉커트럭류 그 밖의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고소작업자동차류 절연고소작업자동차류 방송중계차류 무선중계차류 촬영 및 촬영보조차류 광고용자동차류 물탱크소방차류(특수자동차) 소방펌프차류 화학소방차류 내폭화학소차류 배연차류 고가사다리차류 굴절사다리소방차류 조명차류 구조공작차류 구급차류 현금수송자동차류(특수자동차) 그 밖의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자동차등록증

제 호		최초등록일 : 년 월 일	
① 자동차등록번호		② 차 종	③ 용 도
④ 차 명		⑤ 형식 및 연식 (모델연도)	
⑥ 차 대 번 호		⑦ 원동기형식	
⑧ 사 용 본 거 지			
소유자	⑨ 성명(명칭)	⑩ 주민(법인)등록 번호	
	⑪ 주 소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유의사항 :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 또는 수소인 자동차의 경우 ⑦번란의 '원동기형식' 은 '구동전동기형식' 을 말합니다.

년 월 일

등록관청명

직인

1. 제 원			
㉔ 제원관리번호 (형식승인번호)			
㉓ 길이	mm	㉕ 너비	mm
㉖ 높이	mm	㉗ 총중량	kg
㉘ 배기량	cc	㉙ 정격출력	Ps/rpm
㉚ 승차정원	명	㉛ 최대적재량	kg
㉜ 기통수	기통	㉝ 연료의 종류	(연비: km/L)

유의사항 :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 "정격출력(ps/rpm)"은 "구동전동기 정격출력/회전수(kW/rpm)"를,
 "기통수/배기량(cc)"은 "구동속전지 정격전압/용량(V/Ah)"을,
 "정격출력(ps/rpm)"은 "구동전동기 정격출력/회전수(kW/rpm)"를,
 "연료소비율(km/ℓ)"은 "연료소비율(km/kWh)"을 말하며,
 "정격출력(ps/rpm)"은 "구동전동기 정격출력/회전수(kW/rpm)"를,
 "기통수/배기량(cc)"은 "연료전지 최고출력(kW)"을 말하며,
 "연료소비율(km/ℓ)"은 "연료전지 최고출력(kW/kg)"을 말함이다.

견인차의 최대적재량의 경우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 허용하는 최대 수직하중을 말하며, 견인능력과는 무관합니다.

2. 등록번호판 교부 및 봉인			
㉞ 구분	㉟ 번호판발급일	㊱ 봉인일	㊲ 발급대행 자확인

3. 저당권등록사실(저당권등록의 내용은 자동차등록원부(을)를 열람·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㊳ 구분(설정 또는 말소)	㊴ 일 자
----------------	-------

4. 검사유효기간

[illegible]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자동차	등록 번호			
재발급 사유	☐ 분실·멸실 ☐ 훼손 ☐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란 부족 ☐ 기타			
분실 사유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이
이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7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600원입니다.
유의사항	
※ 신청인이 자동차의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고 다른 공동 소유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의 위임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공동소유자가 가족일 경우에 한해서 가족관계 증명서류로 신분증 사본 대체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또는 종질지 80g/m²]

신·구조문대비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지 제2호 서식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1년 4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3조(자동차의 사용본거지) ① 등록령 제2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2. (생략) <u><신설></u> ②·③ (생략)	제3조(자동차의 사용본거지) ① -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자동차 소유자가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매매용 자동차) : 사업장소재지</u>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변경등록 신청) ① (생략) ② 등록령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략) <u><신설></u>	제29조(변경등록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 」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 <u>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u> 」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 내용이 변경되

	어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	------------------